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7.

발 의 자 : 이광재 · 조승래 · 김 현
백혜련 · 김병주 · 송기현
김우영 · 이재정 · 임오경
허 영 · 백승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,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지·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경기장은 그 건립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단이 이를 직접 운영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, 입장료 징수대상도 서울대회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대회 관련 시설과 달리 취급되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체육시설 설치·관리 및 운영 사업의 대상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이

포함됨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 시설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, 공단이 동계대회 시설을 직접 운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회 유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함(안 제36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4항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3호 중 “체육시설”을 “체육시설(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”을 “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,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,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“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제36조(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체육시설의 설치 · 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· 임대 등 운영 사업</u>	3. <u>체육시설(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<u>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</u>	④ ----- -----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,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, 2018 평창 동계올림픽

육시설의 유지·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 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.	<u>대회 및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</u> <u>픽대회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